

〈자 료〉

## 「유럽契約法原則」에 대한 一考 및 그 翻譯

梁 彰 洙\* 譯

1. 1990년대에 들어와 계약법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현상중의 하나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일 또는 조화·조정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성과가 계속 공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私法統一國際協會(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통상 UNIDROIT라는 약칭으로 불리운다)가<sup>1)</sup> 1994년 5월에 前文 및 7개의 장으로 된 全文 119조의 「國際商事契約原則(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하 「UNIDROIT원칙」이라고 한다)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 이 작업은 1971년의 동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시되어, 당초 프랑스의 다비드, 영국의 슈미트호프, 루마니아의 포페스투의 3인의 법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980년에 새로이 조직된 實務小委員會(Working Group)가 이를 행하였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는 그 사이에 변화가 없지 않으나, 위 원칙을 발표할 당시의 위원으로는, 보넬(Bonell. 委員長, 이태리), 브라질(Brazil. 캐나다), 크레포(Crepeau. 캐나다 퀘벡), 데이트-바(Date-Bah. 영국), 디 마요(Di Majo. 이태리), 판스워스(Farnsworth. 미국), 드로브니히(Drobnig. 독일), 폰테느(Fontaine. 벨기에), 펄스톤(Furmston. 영국), 가로(Garro. 아르헨틴), 하트캠프(Hartkamp. 네델란드), 히로세(廣瀬久和. 일본), 황(Huang. 중국), 코마로프(Komarov. 러시아), 란도(Lando. 덴마크), 마스코우(Maskow. 독일), 탈롱(Tallon. 프랑스), 그리고 간사로서 위 협회 사무국의 피터스가 있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

---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1) 본부를 로마에 두고 있는 이 협회는 1926년에 당시의 國際聯盟의 부속기관으로 출발하였는데, 1940년 이래 독립한 국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5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영어와 불어가 公用語로서, 「국제상사계약원칙」도 영어판과 불어판이 있고, 兩者 사이에는 흥미롭게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점도 있지 않나 여겨진다. 여기서는 英語만을 들어두기로 한다.

으로부터 쟁쟁한 계약법의 전문가를 모은 것이다.

(2) 위의 원칙은 조문의 형식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法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조약도 아니고, 각국에 대하여 國內法化를 구할 무슨 강제적 장치를 갖춘 것도 아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의거할 합리적 계약법의 「표준」으로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내용의 설득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80년의 소위 「비엔나협약」과<sup>2)</sup> 크게 다르다. 또한 비단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야를 매우 넓게 잡고 있으며(예를 들면 플랜트계약 등도 고려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계약의 무효사유에 관한 문제, 즉 착오·사기·강박 등의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3)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들어 보면:

① 당사자에게 신의성실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요구에 좇아 행위할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1.7조)

② 당사자는 자유로 교섭할 수 있으며 합의에 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불성실하게 교섭하거나 교섭을 불성실하게 파기한(negotiate or break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규정(제2.15조)

③ 일반계약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둔 특별한 규정(제2.19조 이하), 예를 들면 당사자 쌍방이 각기 자신이 마련한 일반계약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하는 소위 「정형계약서의 싸움(battle of the forms)」에<sup>3)</sup> 관한 규정(제2.22조)

④ 원시적 불능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제3.3조)

2) 원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라고 한다. 이 협약은 10개국의 비준·가입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우리 나라의 주요한 무역상대국을 포함한 약 50개의 나라가 가입하고 있다(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나라로서는 영국과 일본 등이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에 대한 우리 나라의 문헌으로는 우선 林泓根·李泰熙 共編,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상의 諸問題(1991); 슈레히트림, 金玟中 譯, 유엔統一賣買法(1995); 崔興燮, 유엔국제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1997) 참조.

3) 이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서는 우선 Kötz, Europäisches Vertragsrecht(1996), S. 47f.; v. Mehren, The »Battle of the Forms«: A Comparative View, Am. J. Com. L. 38(1990), p. 265; Neumayer, Das Wiener Kaufrechtsübereinkommen und die sog. »battle of forms«, Festschrift für Giger(1989), S. 501; Jacobs, The Battle of the Forms: Standard Term Contracts in Comparative Perspektive, Int.Comp. L. Q. 34(1985), p. 297 등 참조.

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錯誤를 공통착오, 상대방이 야기한 착오, 상대방이 방치한 착오에 제한하는 규정(제3.4조 내지 제3.7조)

⑥ 계약 전체나 개개의 계약조항이 부당하게(unjustifiably) 일방에 과도한 이익(excessive advantage)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제3.10조)

⑦ 「가혹사유(hardship)」가 있는 경우, 즉 사정변경이 예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再交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그 해제나 適應(adapt)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6.2.1.조 이하)

⑧ 계약불이행의 「추완(cure)」에 관한 규정(제7.1.4조)

⑨ 면책조항의 주장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7.1.6조)

⑩ “법원이 당사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때에는, 이 명령에 좇지 아니하면 그 당사자는 制裁金(penalty)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할 수도 있다”는 규정(제7.2.4조)

⑪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 불이행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제7.3.1조 이하)<sup>4)</sup>

등이 있다.

(4) 이 UNIDROIT 원칙에 대한 문헌으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Bonell M. 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nd ed.(1997).

Symposium: Contract Law in a Changing World, in: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40(1992), pp. 541-702.

Institute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and Practice(ed.),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 New Lex Mercatoria?, ICC Publication n° 490/1(1995).

Tulane Law Review, Vol. 69(1995), pp. 1149-1257.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3(1994).

(5) UNIDROIT는 이 「國際商事契約原則」을 확대한 「제2판」을 계획하고 그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199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로마의 同協會에서 열린 「UNIDROIT國際商

4) 한편 장래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채무이행을 유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적절한 이행의 보장(assurance of due performance)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제7.3.4조(「유럽계약법 원칙」 제8:105조에 상응한 규정이 있다)도 주목할 만하다.

事契約原則의 擴大第2版을 위한 實務小委員會」의 제1차회의에서, 이 제2판에 새로이 추가할 항목으로, 대리(보넬), 제소기간(limitation of actions, 소멸시효 등)(셀레히트림),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이전(퐁테느), 제3자를 위한 계약(핌스톤), 상계(조프레-스피노시 Jauffret-Spinosi, 프랑스), 권리포기(핀 Finn, 호주)의 각 주제를 임시적으로 정하고, 각 주제에 대하여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할 보고자(Rapporteur)를 각각 지정하였다(그 이름은 위 괄호 안).<sup>5)</sup>

그리하여 1999년 2월 22일부터 이태리의 볼차노에서 열린 위 實務小委의 제2차회의에서는 우선 대리, 제소기간,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제출된 각각의 보고서가 검토되었고, 이 중 제소기간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는 각각의 보고자에게 다음 회의에서의 검토를 위한 조문화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제3차회의를 2000년 1월 24일부터 개최하기로 하였다.

2. 그리고 주목되어야 할 것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sup>6)</sup> 틀 안에서 통일유럽민법전을 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8년 11월에 그 確定版이 발표된 「유럽契約法 原則(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Completed and revised version 1998)」이다.

(1)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유럽의 새로운 보통법(ius commune)」을 지향하는 노력은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私法의 공통핵에 관한 트렌토계획(Trento Project on the Common Core of European Private Law)」은 1994년부터 이태리 트렌토대학의 부사니와 마테이 두 교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법통일의 달성을 직접의 목표로 지향하지 아니하고, 일단 “유럽 안의 서로 다른 법체계에 있어서 관련 요소들에 대한 최대한으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한다. 나아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태리의 피렌체에 있는 「유럽대학(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의 법과대학에 「유럽민법」의 강의가 마련되어, 그를 위한 講義資料(예를 들면, 미국의 소위 national law school들에서 쓰여지는 것과 같은 「유럽보통법 케이스북(casebooks on the common law of Europe)」 혹은 「유럽케이스북(European Casebooks)」)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97년 2월 28일에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의<sup>7)</sup> 「유럽民法典을 향하여(Towards a European Civil Code)」라는 제목이 웅변으로 말하여

5) 그 외에 일본의 우치다(内田貴)에게, UNIDROIT원칙을 電子商去來에 적용하는 경우의 변용문제에 관한 覺書(note)의 제출을 위탁하였다.

6) 유럽연합의 조직 및 법 일반에 대하여는 우선 金大淳, EU法論(1995) 참조.

7) 이 모임에 참가하였던 어느 일본학자의 다음의 印象記는 우리의 입장에서 一讀의 가치가 있다: 小粥太郎, “ヨーロッパ統一民法典と法學者”, NBL 617호(1997.5), 54면 이하.

주듯이, 바로 통일적인 「유럽의 민법」을 起草하고자 하는 노력도 행하여지고 있다.<sup>8)</sup> 1994년 5월 6일에 유럽議會는 “회원국의 사법의 일정한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유럽통일민법전(Common European Code of Private Law)」의 起草可能性을 검토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유럽계약법 원칙」의 용도, 주요한 내용 및 이를 작성한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그 위원장인 란도의 이름을 따서 통상 「란도위원회」 Lando Commission라고 불리운다)의 개요 등에 대하여는 이미 朴永馥 교수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sup>9)</sup>

그런데 그 글은 1995년에 나온 「유럽계약법 원칙. 제1부: 이행·불이행 및 구제수단」을<sup>10)</sup>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고, 나아가 1997년에 나왔다는 「(비공식)시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1998년 11월에 개정 및 완성된 「유럽계약법 原則」 確定版에<sup>11)</sup>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確定版을 번역·소개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3) 「유럽계약법 원칙」과 앞서 본 UNIDROIT원칙은 많은 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1.(3)에서 든 항목에 따라 열거하자면:

- ① 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에 대하여 제1:201조
- ② 신의에 반하는 계약교섭 및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2:301조
- ③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계약내용, 즉 일반거래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효

8) 이 계획을 學問的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努力의 결실로는 우선 민법의 여러 중요한 테마에 대하여 각국 학자의 글을 모은 Hartkamp & von Bar(ed.), *Towards a European Civil Code*(1994; 2nd ed., 1998)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편집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9) 朴永馥, “유럽의 統一契約法”, *法曹* 1999년 1월호 235면 이하; 2월호 236면 이하 참조. 일본의 문헌으로 우선 渡邊達雄, “「ヨーロッパ契約法の諸原則」における不履行法の體系”, *法學志林* 95권 1호(1997), 31면 이하; 95권 3호(1998), 37면 이하; 96권 1호(1998), 35면 이하; 潮見佳男, “最近のヨーロッパにおける契約責任・履行障害法の展開 —改正オランダ民法典・ドイツ債務法改正委員會草案・ヨーロッパ契約法原則—”, *阪大法學* 47권(1997) 2호, 41면 이하; 3호, 103면 이하 등 참조.

10) Ole Lando and Hugh 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erformance, Non-performance and Remedies*(1995).

11) 이를 「完成 및 修訂版(completed and revised vers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를 들면 1994년에 공표된 「제1부: 이행·불이행 및 구제수단」이나 기타의 규정들에 대하여도 「修訂」을 행하였고, 나아가 거기서 규율되지 아니하였던 규정들, 예를 들면 제3장의 데리나 제1장의 일부 「일반규정」의 규정을 새로이 가하여 「完成」시켰다는 의미일 것이다.

력발생요건 또는 그 효력의 제한에 대하여 특히 정하는 제2:104조 이하, 제4:110조, 제5:103조 이하, 나아가 「정형계약서의 충돌」에 관한 제2:209조

④ 원시적 불능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제4:102조

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를 상대방이 야기한 착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면서 신의에 반하여 방치한 착오, 공통착오로 제한하는 제4:103조

⑥ 과잉이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 제4:109조

⑦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재교섭청구 및 법원의 해제 또는 변을 정하는 제6:111조

⑧ 계약불이행의 「추완」에 관한 제8:104조

그리고 ⑩ 본질적 불이행만을 계약해제권 발생요건으로 정하는 제9:301조 등이 그러하다.

그것은 그 작성작업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양측에 공통된 바 많다는 人的 理由도 중요하겠으나,<sup>12)</sup> 오늘날의 계약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얻어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유럽계약법 원칙」은 UNIDROIT 원칙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 몇 가지 흥미로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代理(agency)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제3장), 그 외에도 개별적인 예를 들면:

(i) 각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할 의무라는 일반적·포괄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1:202조

(ii) 소위 「完結條項(merger clause)」(이에 대하여는 UNIDROIT 원칙 제2.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의 효력을 보다 제한하는 제2:105조, 특히 “당사자의 언명이나 행태를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믿은 한도에서”는 완결조항의 원용을 금지하는 그 제4항

(iii) 계약교섭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또는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제3:302조

(iv)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으면 계약의 變應(adaptation)을 인정하는 제4:105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합리성(reasonableness)」(그 定義는 제1:302조에서 행하여지고 있다)의 요건이 이 원칙에서 가지는 막중한 의미이다. 이 요건은,

12) 예를 들어 「란도위원회」의 起草委員 5인 중 드로브니히, 란도, 탈롱(나머지는 영국의 빌(Beale)과 구드(Goode)이다. 기초위원회 대하여는 Lando/Beale(註 10), Preface p. xi 참조)은 UNIDROIT 원칙의 실무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그 위원으로서 상당 부분의 「보고자(Rapporteur)」로서도 일하였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석, 각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등 계약법의 모든 국면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와 같은 不明確要件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는 배경에는 아마도 이를 「價値充填」하여 그 내용을 개별적 상황에서 명확하게 할 임무를 수행하는 法適用者, 특히 法官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3. 한편 法務部는 금년 2월 초에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譯者도 그 위원의 1인이 되었는데, 특히 계약총칙, 채무불이행법 및 변제법, 나아가 총칙의 의사표시법 등에 대하여는 앞서 말한 UNIDROIT 원칙과 「유럽계약법 원칙」은 의미 있는 입법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주지하는 대로 우리 민법은 유럽대륙의 주요한 나라, 특히 독일·프랑스 등의 민법전을 주요한 참고자료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제 저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등 개별국가의 민법전을 넘어선 「유럽통일민법전」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학이 가지는 약점중의 하나, 즉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 없이 어느 한 나라(그 동안에는 특히 독일)의 제도나 법리를 절대화하여 이를 우리 민법의 해석에 直輸入하려고 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反省의 계기를 제공한다. 오히려 민법이 繼受法이기에, 그것도 混合的 繼受의 법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모든 나라의 모든 제도를 비판적으로 음미하여 이를 해석에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位置에 있다고 또는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적 음미」는 바로 위와 같은 유럽 자체 내의 움직임에서 그들 자신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바인 것이다. 물론 「유럽통일민법전」 제정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고, 그 야심찬 구상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4. 번역에 있어서는 直譯을 위주로 하였다. 원문을 내세워 對譯으로 할 것도 생각하여 보았으나, 중요한 용어·표현 등에 대하여 원문을 併記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하였다(요즈음 별로 필요도 없는 對譯이 흔히 행하여지는 데 대한 反感도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번역으로서는 혹 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도 없지 않으나, 이는 원문이 條文(black-letter rules) 형식의 法典體制를 갖추었다는 것과 관련되는 점으로서 이해를 구한다.



## 유럽계약법 원칙(譯)

### 제1장 일반규정

#### 제1절 원칙의 적용범위

##### 제1:101조 : 원칙의 적용

- (1) 이 원칙은 유럽공동체에서 계약법의 일반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도로 한다.
- (2) 이 원칙은 당사자들(parties)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또는 계약이 그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 (3) 이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a) 당사자들이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유사한 것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합의한 경우; 또는
  - (b) 당사자들이 계약을 규율할 법체계 또는 법규칙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4) 이 원칙은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 또는 법규칙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02조 : 계약의 자유

- (1)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요구와 이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 (2) 당사자들은 이 원칙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원칙의 어느 것이라도 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과 다른 정함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03조 : 강행법

- (1)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법이 이를 허용하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이 이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가의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國際私法의 관련 규정이 계약의 준거법에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정하는, 내국법, 초국가법(*supernational law*),<sup>13)</sup> 국제법의 강행규정은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13) EC와 같은 國家聯合의 법 등을 말한다.



제1:104조 : 합의 유무의 문제에 대한 적용

(1) 이 원칙을 채택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들의 약정의 존부와 유효성은 이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그러나 당사자(a party)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의 행태의 효과를 이 원칙에 좇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가 합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상주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나라의 법을 원용할 수 있다.

제1:105조 : 관행 및 거래관례

(1)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의한 관행(usages) 및 그들 사이에 성립한 거래관례(practices)에 구속된다.

(2) 당사자들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여길 관행에 구속된다. 다만 그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6조 : 해석 및 보충

(1) 이 원칙은 그 목적에 상응하여 해석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계약관계의 명확성 및 적용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이 원칙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나 이 원칙이 명시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문제는 가능한 한 이 원칙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에 상응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체계가 적용된다.

제1:107조 : 유추에 의한 이 원칙의 적용

이 원칙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키는 약정, 일방적 약속 및 어떠한 의도를 지시하는 기타의 언명이나 행태에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절 일반적 의무

제1:201조 :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1)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좇아 행위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제1:202조 : 협력의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할 의무(a duty to co-operate in order to give full effect to the contract)를 진다.

## 제3절 용어 및 기타 규정

## 제1:301조 : 용어의 의미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원칙[에서 쓰여진 용어]에서

- (1) 「행위(act)」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 (2) 「법원(court)」은 仲裁法廷을 포함한다;
- (3) 「고의」의(intentional) 행위는 무모하게(recklessly) 행하여진 행위를<sup>14)</sup> 포함한다;
- (4) 「불이행(non-performance)」은, 면책되는지(excused)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체를 가리키며, 이행지연(delayed performance), 결함 있는 이행 및 계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어떠한 사항이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 인간이 제의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것임을 알았어야 했던 것이면, 이 사항은 「실질적이다(material)」.

(6) 「서면에 의한」(written) 언명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메일 및 기타 양측에 대하여 언명의 관독가능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수단을 포함한다.

## 제1:302조 : 합리성

이 원칙에서, 합리성(reasonableness)은 당사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실하게 행위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바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질과 목적, 구체적 경우의 여러 사정, 당해 거래계 또는 직업의 관행 및 거래관례가 고려되어야 한다.

## 제1:303조 : 통지

(1) 통지(notice)는, 서면 또는 기타 어떠한 것이든, 제반 사정에 적절한 모든 수단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2)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제4항, 제5항에 좇아야 한다.

14) 불어 원문에는 “면책될 수 없는 행위(action inexcusable)”라고 되어 있다.

(3) 통지는, 상대방 또는 그의 영업지 또는 우편주소에 전달되던 때, 또는 상대방에게 영업지나 우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주거소에 전달된 때에, 그에게 도달한다.

(4) 당사자 일방(one party)이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자신에게 그러한 불이행이 합리적으로 예견됨을 이유로 통지를 행하고, 또한 그 통지가 상당하게 발송되거나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통지의 전달에서의 지연이나 부정확 또는 통지의 불도달은 효력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통지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정 아래서라면 도달하였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통지는 그 철회가 통지보다 먼저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6) 이 조에서 「통지」는 약속, 언명, 청약, 승낙, 청구, 요구 기타 표명의 의사전달을 포함한다.

#### 제1:304조 : 기간의 계산

(1)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대방이 응답하거나 기타의 행위를 할 기간을 서면으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은 그 서면의 작성일자로 적힌 날부터 기산한다.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 안에 존재하는 공식 휴일, 공식 비근로일은 기간의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간의 마지막 날이 상대방의 주소(address)에서 또는 문제된 행위가 행하여져야 할 곳에서 공식 휴일이나 공식 비근로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곳에서의 최초의 근로일까지 연장된다.

(3)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표시된 기간은 다음날의 0시부터 시작하고, 기간의 최종일의 24시에 종료한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모든 응답 또는 행하여야 하는 다른 행위는 기간 종료일에, 관련되는 곳의 영업의 정상적 종료시까지 도달 또는 완성되어야 한다.

#### 제1:305조 : 인식 또는 의사의 추정

당사자의 동의 아래 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람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행을 위탁받거나 그 동의 아래 이행하는 사람이

(a) 어떠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던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예견하여야 했던 경우; 또는

(b)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with gross negligence) 행위한 경우 또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맞지 아니하게 행위한 경우에,

그 인식, 예견 또는 행위는 그 당사자 자신에게 귀속된다.

## 제2장 계약의 체결

## 제1절 일반규정

## 제2:101조 : 계약 체결의 요건

(1) 계약은,

(a)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한

(b) 그들이 충분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체결된다.

(2)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 또는 입증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형식에 관한 어떠한 다른 요건에도 걸리지 아니한다. 계약은 證人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

## 제2:102조 : 의도

계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당사자의 의도는 그 당사자의 언명 또는 행태로부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 제2:103조 : 충분한 합의

(1) 그 내용이

(a) 당사자들에 의하여 충분히 확정되어 계약이 실행될 수 있을 때, 또는

(b) 이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충분한 합의가 인정된다.

(2)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one of the parties)이 당사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사항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2:104조 :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내용

(1) 개별적으로 합의되지(individually negotiated) 아니한 계약내용은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체결시에 상대방이 이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그에 대하여 원용할 수 있다.

(2) 계약서면에 단순히 계약내용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비록 상대방이 이에 서명하였어도 그로 하여금 이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 제2:105조 : 완결조항

(1) 서면에 의한 계약이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음을 표명하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조항(“완결조항” merger clause)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건의 언명, 약속 또는 합의는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2) 완결조항이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사건의 언명, 약속 또는 합의가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아니할 것을 의도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이 규정은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3) 당사자들의 사건의 언명은 계약의 해석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개별적으로 합의된 조항에 의하는 외에는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4)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의 언명이나 행태를 합리적으로 믿은 한도에서 그 언명이나 행태로 인하여 완결조항의 원용이 금지될 수 있다.

## 제2:106조 : 서면에 의한 수정

(1)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키는 합의가 서면으로 행하여질 것을 정하는 서면 계약상의 조항은, 그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키는 합의가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의 언명이나 행태를 합리적으로 믿은 한도에서 그 언명이나 행태로 인하여 그러한 조항의 원용이 금지될 수 있다.

## 제2:107조 : 승낙 없이 구속력 있는 약속

승낙 없이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의도된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 제2절 청약과 승낙

## 제2:201조 : 청약

(1) 제안은,

(a) 타방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의도되고, 또한

(b) 계약을 구성하기에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된다.

(2) 청약은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에 대하여 또는 일반공중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3) 광고나 카탈로그에 의하여 직업적 공급자가 행하는 또는 물품의 진열에 의한, 제시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제안은, 물품의 재고 또는 공급자의

용역공급능력이 소진되는 때까지는, 그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공급한다는 청약으로 추정된다.

제2:202조 : 청약의 철회

(1) 청약은 청약 상대방이 그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 또는 행태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계약이 제2:20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체결되기 전까지, 철회될 수 있다.

(2) 일반공중에 대한 청약은 청약을 한 것과 같은 수단으로 철회될 수 있다.

(3) 그러나 청약의 철회는,

(a) 청약이 그것이 철회할 수 없는 것임을 지시한 경우; 또는

(b) 승낙을 위한 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또는

(c) 청약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가 청약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2:203조 : 청약의 실효

청약에 대한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실효한다.

제2:204조 : 승낙

(1) 청약 상대방에 의한 어떠한 형식의 언명 또는 행태라도 그것이 청약에 대한 동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낙이 된다.

(2) 침묵이나 무활동은 그 자체로서 승낙이 되지는 않는다.

제2:205조 : 계약 체결의 시기

(1) 청약 상대방이 승낙을 발송하면,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계약이 체결된다.

(2) 행태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그 행태가 청약자에게 알려지는 때에 계약이 체결된다.

(3) 청약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성립한 거래관례에 의하여 또는 관행에 의하여, 청약 상대방이 청약자에의 통지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승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실행이 시작한 때에 계약이 체결된다.

제2:206조 : 승낙의 기간제한

(1) 청약에 대한 승낙이 유효하려면, 승낙은 청약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청약자

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은 합리적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3) 제2:205조 제3항에 따라 이행행위에 의하여 승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 내에, 또는 그러한 시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합리적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제2:207조 : 지연된 승낙

(1)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없이 청약 상대방에게 이를 승낙으로 다룰 것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2) 지연된 승낙을 포함하는 서신 기타의 서면이 만일 그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적정한 시기에 도달하였을 사정 아래서 송부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지체없이 청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청약을 실효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을 고지하지 아니한 한,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 제2:208조 : 변경된 승낙

(1)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하는 청약 상대방의 응답은 거절이고 또한 새로운 청약이다.

(2) 청약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은 그것이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으로 기능한다.

(3) 그러나 그러한 응답은,

(a) 청약이 명시적으로 청약의 내용에 대한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b) 청약자가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에 지체없이 이의한 경우; 또는

(c) 청약 상대방이 승낙을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에 대한 청약자의 동의를 조건에 걸리게 하고 또한 그 동의가 합리적 기간 내에 청약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의 거절로 본다.

#### 제2:209조 : 일반약관의 충돌

(1) 당사자들이 청약과 승낙이 각기 서로 상반하는 계약일반약관을 지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 이들 일반약관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동일한 한도에서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 (a) 제1항에 기한 계약에 구속될 의도가 없음을, 미리, 명시적으로, 또한 일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시한 경우; 또는
- (b) 그러한 계약에 구속될 의도가 없음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 (3) 계약의 일반약관이란, 일정한 성질을 가지는 불특정한 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마련된 내용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2:210조 : 직업적 서면확인

직업적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것을 최종서면에 담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부한 계약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이 추가된 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b)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에 이의한 경우.

#### 제2:211조 :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

이 절의 규정은 계약체결의 과정이 청약과 승낙으로 분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 제3절 교섭에 대한 책임

##### 제2:301조 : 신의성실에 반하는 교섭

(1) 당사자는 교섭의 자유를 가지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liable) 아니한다.

(2) 그러나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교섭하거나 교섭을 중단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특히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할 진정한 의도 없이 교섭을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한다.

##### 제2:302조 : 비밀의 침해

교섭의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비밀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은, 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구제수단은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장 대리인의 권한

#### 제1절 일반규정

제3:101조 : 이 장의 규율범위

(1) 이 장은 대리인 또는 기타의 매개인(agent or other intermediary)이 제3자 [즉 대리행위의 상대방]와의 계약에 관하여 그의 본인을 구속할 권한을 규율한다.

(2) 이 장은 법률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인의 권한이나 공적 또는 사법적 권한에 의하여 임명된 대리인의 권한을 규율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대리인 또는 매개인과 그의 본인 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지 아니한다.

제3:102조 : 대리의 형태

(1)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직접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2절). 본인의 동일성이 대리인의 행위시에 제시되었는지 아니면 후에 제시될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매개인이 본인의 지시에 기하여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나 그의 이름으로 행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매개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아래 제3절).

#### 제2절 직접대리

제3:201조 : 명시적 대리권, 묵시적 대리권 및 표견대리권

(1)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2) 대리인은 대리권이 수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정황 아래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행할 권한이 있다.

(3) 어떠한 사람의 언명 또는 행태가 제3자로 하여금 그가 표견대리인(apparent agent)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그에게 수여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또 신의성실에 좇아 믿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표견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3:202조 :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

대리인이 제3:201조에서 정하여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경우에, 그의

행위는 본인과 제3자를 서로에 대하여 직접 구속한다. 대리인 자신은 제3자에 대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 제3:203조 : 본인의 불명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일성이 후에 제시될 것이었던 경우에, 제3자가 요구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그 동일성이 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자신이 계약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3:204조 :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넘는 대리인

(1)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권 없이 또는 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에는 그의 행위는 본인과 제3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2) 제3:207조에 의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은 제3자를 그가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하였던 경우와 같은 지위에 놓을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할 책임을 진다. 이는 제3자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205조 : 이익상반

(1)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대리인을 이익상반(conflict of interest)의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제4:112조 내지 제4:116조의 규정에 좇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익상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대리인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도 행위한 경우; 또는

(b) 계약이 그 자체로서 대리인의 專屬的 능력(personal capacity)에 속하는 경우.

(3) 그러나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 그가 대리인이 그와 같이 행위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b) 대리인이 이익상반을 그에게 밝히고 그가 합리적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206조 : 복대리

대리인은 인적 성질이 없고 또 대리인이 직접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대리인(subagent)을 선임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이 절의 규정은 복대리에 적용된다;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복대리인의 행위는 본인과 제3자를 서로에 대하여 직접 구속한다.

## 제3:207조 : 본인의 추인

(1)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권 없이 또는 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에 본인은 그의 행위를 추인(ratify)할 수 있다.

(2) 추인이 행하여지면 대리인의 행위는 권한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나, 다른 사람의 권리는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다.

## 제3:208조 : 대리권의 확인에 관한 제3자의 권리

본인의 언명이나 행태가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때에는 그는 본인에게 서면의 확인요청서를 보내거나 그의 추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이 지체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는 권한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209조 : 대리권의 존속기간

(1) 대리인의 권한은 제3자가 다음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a) 대리인의 권한이 본인, 대리인 또는 양자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실; 또는

(b) 대리권이 수여된 목적인 행위가 완료되었거나 대리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 또는

(c) 대리인이 채무초과되거나(insolvent),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사실; 또는

(d) 본인이 채무초과된 사실.

(2) 애초에 대리권이 고지되거나 공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 제1항 (a)에 정한 대리권 소멸이 고지되거나 공표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대리권 소멸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3)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이나 그 승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기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 제3절 간접대리

## 제3:301조 :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지 아니하는 매개인

## (1) 매개인이

(a) 본인의 지시에 기하여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나 그의 이름으로 행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본인으로부터의 지시에 기하여 행위하나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매개인과 제3자는 서로에 대하여 구속된다.

제3:302조 : 매개인의 채무초과 또는 본인에 대한 본질적 불이행

매개인이 채무초과된 경우, 또는 그가 본인에 대하여 본질적(fundamental) 불이행을 범한 경우, 또는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이 이행기 전에 명백한 경우에는,

(a)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개인은 제3자의 이름과 주소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b)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매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매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defences)를 행사할 수 있다.

제3:303조 : 매개인의 채무초과 또는 제3자에 대한 본질적 불이행

매개인이 채무초과된 경우, 또는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본질적 불이행을 범한 경우, 또는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이 이행기 전에 명백한 경우에는,

(a)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매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3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b) 제3자는 본인에 대하여 그가 매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은 매개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 및 자신이 매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를 행사할 수 있다.

제3:304조 : 통지요건

제3:302조 및 제3:303조에 정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의도가 각각 매개인에게 또한 제3자 또는 본인에게 통지되어야 행사될 수 있다. 통지를 수령하면 제3자 또는 본인은 이제 매개인에게는 이행할 수 없다.

## 제4장 유효성

제4:101조 : 규율의 대상이 아닌 사항

이 장은 불법성, 부도덕성 또는 능력의 결여로 인한 무효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아니한다.

제4:102조 : 원시적 불능

인수한 채무의 이행이 계약의 체결시에 불능이라는 이유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

제4:103조 : 사실 또는 법에 관한 착오

(1)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시에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i)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또는

(ii)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또 착오 당사자를 착오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거나; 또는

(iii) 상대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졌거나, 또한

(b) 상대방이 착오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그러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 당해 정황 아래서 그의 착오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b) 그가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였거나 당해 정황 아래서 인수하였어야 하는 경우.

제4:104조 : 의사표명상의 부정확

언명의 표시 또는 전달상의 부정확은 그 언명을 하거나 발송한 사람의 착오로 다루어지며, 제4:103조가 적용된다.

제4:105조 : 계약의 변용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 있는 당사자가 이해한 바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실제로 그와 같이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권한 있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해한 바에 대하여 고지받은 후 바로, 또 그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의 유효]를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표시나 이행 후에는 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전에 행하여진 취소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3)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착오가 없었다면 합리적으로 합의하였을 바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06조 : 부정확한 정보

상대방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정보가 제4:103조에 의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제4:1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07조 : 사기

(1) 당사자는, 언어에 의하든지 행태에 의하든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사기적 표시에 의하여 또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좇아 상대방이 開示하였어야 할 정보의 사기적 不開示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표시 또는 불개시는 그것이 기망의 의도로 행하여진 때에는 사기적이다.

(3)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가 당사자가 특정한 정보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그 당사자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지는지 여부;
- (b) 그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지출하는 비용;
- (c)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스스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또
- (d) 상대방에 대한 그 정보의 명백한 중요성.

#### 제4:108조 : 강박

당사자는 상대방의 다음과 같은 행위의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a) 그 자체 위법한 행위, 또는
- (b)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

다만 그 당사자가 당해 정황 아래서 합리적 대안을 가졌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09조 : 과잉이익 또는 부당이익

(1)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상대방에게 의존하였거나 그와 신뢰관계에 있었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하거나 긴박한 결핍상태에 있었거나, 경솔하거나 무지하거나 무경험하거나 교섭수법을 결여하였으며, 또한

(b)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또 당해 정황과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의 처지를 중대하게 불공평하게 이용하거나 과도한 이익(excessive benefit)을 얻은 경우.



(2) 취소할 권한 있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합의되었을 바에 좇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을 변용시킬 수 있다.

(3) 과잉이익 또는 부당이익을 이유로 취소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바로, 또 그 통지를 한 당사자가 그 통지[의 유효]를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그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을 변용시킬 수 있다.

제4:110조 :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부당조항

(1) 의무의 내용인 이행의 성질, 계약의 모든 다른 조항 및 계약의 체결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계약조항이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요구에 반하여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으로 상당한 불균형(significant imbalance)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그 조항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 조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계약의 주된 사항(main subject matter)이 평범하고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된 경우 그 주된 사항; 또는

(b) 일방 당사자의 의무의 가액을 타방 당사자의 의무의 가액과 비교하여서의 대등성.

제4:111조 제3자

(1) 그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 있는(responsible) 제3자 또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계약의 성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a)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를 야기하거나 착오를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b)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 사기를 한 경우,

(d) 강박을 한 경우, 또는

(e) 과잉이익이나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이章에서 정하는 구제수단은 그 행태나 인지가 그 당사자 자신의 것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요건 아래서 인정된다.

(2) 기타의 모든 제3자가:

(a)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 사기를 한 경우,

(c) 강박을 한 경우, 또는

(d) 과잉이익이나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 또는 취소시에 당사자가 아직 계약을 신뢰하여 행위하지 아니하였던 때에는, 이章에서 정하는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 제4:112조 : 취소의 통지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야 한다.

#### 제4:113조 : 기간의 제한

(1) 취소의 통지는 취소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 또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제반 사정을 적정하게 고려할 경우에 합리적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2) 그러나 제4:110조에서 정한 개별조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114조 : 추인

계약을 취소할 권한 있는 당사자가 취소의 원인을 알거나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게 된 후에 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는 배제된다.

#### 제4:115조 : 취소의 효력

취소가 행하여지면 각 당사자는, 그가 취소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에 기하여 급부한 것에 관하여, 그가 동시에 그 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訴求할 수 있다.

#### 제4:116조 : 일부취소

취소의 원인이 계약의 특정한 조항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은 그 조항에만 미친다. 다만 구체적 경우의 모든 사정을 적정하게 고려할 때 나머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17조 : 손해배상

(1) 이 장의 규정에 기하여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착오, 사기, 강박 또는 과잉이익이나 부당이익의 수취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자신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지위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하는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2) 이 장의 규정에 기하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113조 또는 제4:114조에 의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당사자는, 착오, 사기, 강박 또는 과잉이익이나 부당이익의 수취에 의하여 그에게 야기된 손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4:106조의 의미에서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오도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범위의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3) 기타의 사항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제9장 제5절의 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변용된 바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4:118조 : 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

(1) 사기, 강박 또는 과잉이익이나 부당이익의 수취에 대한 구제수단 및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불공정조항을 취소할 권리는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2) 착오 및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은 그 배제나 제한이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지 아니한 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4:119조 :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당사자가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발생시키는 사정 아래서 이 장에서 정하는 구제수단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어느 구제수단도 이를 추급할 수 있다.

## 제5장 해석

제5:101조 : 해석의 일반규칙

(1) 계약은 그것이 문언의 문자적 의미와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공통한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고 계약의 체결시에 타방이 그의 의도를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은 그에 의하여 의도된 바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의도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들과 동일한 유형의 합리적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5:102조 : 관련 있는 사정들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예비적 교섭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정황;

- (b) 계약이 체결된 후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행태;
- (c) 계약의 성질과 목적;
- (d) 당사자들이 유사한 조항에 이미 부여한 해석 및 그들 사이에 성립한 거래관례;
- (e) 그 계약조항과 표현에 당해 거래계에서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의미 및 유사한 조항에 주어진 해석;
- (f) 관행; 및
- (g)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제5:103조 : 작성자 불리의 원칙

개별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계약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제5:104조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개별적으로 합의된 조항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우선한다.

제5:105조 : 계약 전체의 고려

각 계약조항은 그것이 그 안에 자리하는 전체 계약에 비추어 해석된다.

제5:106조 : 유효 해석의 원칙

계약의 조항을 적법하고 또는 유효하다고 하는 해석이 그러하지 아니한 해석에 우선한다.

제5:107조 : 언어상의 불일치

계약이 둘 이상의 언어본(language versions)으로 작성되고 그 중 어느 언어가 기준인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각 언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계약이 최초로 작성된 언어본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

## 제6장 내용과 효력

제6:101조 :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언명

(1) 계약의 체결 전이나 체결시에 행하여진 일방 당사자의 언명은, 상대방이 당해 정황 아래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였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 (a) 그 언명이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중요성;

- (b) 그 당사자가 그 언명을 거래과정에서 행하여(였)는지 여부;
- (c) 당사자들의 각각의 전문지식.

(2) 당사자 중 일방이 전문적 공급자(professional supplier)로서 용역이나 물품 기타 재산의 질이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그것의 판매활동이나 선전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의 체결 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언명은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다만 상대방이 그 언명이 부정확함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역이나 물품 기타 재산을 전문적 공급자를 위하여 선진하거나 판매활동하는 사람 또는 종전에 거래상 연결관계에 있던 사람이 제공한 그러한 정보 및 기타의 보장(undertakings)은 전문적 공급자측에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킨다. 다만 그가 그 정보나 보장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02조 : 묵시적 의무

계약은, 명시적 내용에 부가하여, 다음으로부터 인정되는 묵시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a) 당사자들의 의도;
- (b) 계약의 성질과 목적 및
- (c)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제6:103조 : 은닉행위

당사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합의를 반영할 의도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외견상의 계약(apparent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진정한 합의가 효력을 가진다.

제6:104조 : 가격의 결정

계약이 가격 또는 그것의 결정방법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합리적 가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6:105조 : 일방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

당사자 일방이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을 정하기로 한 경우에,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때에는, 합리적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이에 같음하며, 이와는 다른 정함이 있어도 이는 같다.

제6:106조 : 제3자에 의한 결정

(1) 제3자가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을 정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이를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이를 정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권한을 법원에 수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3자가 정한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합리적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이에 같음한다.

제6:107조 : 부존재하는 사정에 의한 결정

가격이나 다른 계약내용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정하여지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것이 소멸하거나 이용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에 가장 근접한 상응하는 사정이 이에 같음한다.

제6:108조 : 이행의 품질

계약이 품질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적어도 평균품질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109조 : 불확정기한을 정한 계약

불정확기한을 정한 계약은 각 당사자에 의하여 합리적 유예기간을 두어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제6:110조 : 제3자를 위한 약정

(1) 승약자(promisor)와 요약자(promisee)가 제3자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수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계약의 목적 또는 구체적 경우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추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동일성이 그 합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정하여질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제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요약자는 승약자에 대한 통지로써 제3자의 이행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제3자가 요약자로부터 그 권리가 철회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던 경우, 또는
- (b) 승약자 또는 요약자가 제3자로부터 그가 그 권리를 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았던 경우.

제6:111조 : 사정의 변경

(1)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이행의 부담이 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계약의 이행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극도로 부담스럽게(excessively onerous) 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변용이나 종료를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a) 사정변경이 계약의 체결 후에 일어나고,

(b)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계약의 체결시에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c) 사정변경의 위험이, 계약에 의하면,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들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a) 법원이 정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b) 사정변경으로 생기는 손실과 이익(losses and gains)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의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계약을 변용시킬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은 교섭을 거부하거나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교섭을 중단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제7장 이행

### 제7:101조 : 이행지

(1) 계약상 의무의 이행지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결정될 수 없는 때에, 이행지(place of performance)는:

(a) 금전지급의무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의 채권자의 영업지;

(b) 금전지급 이외의 의무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의 채무자의 영업지이다.

(2)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전항의 목적을 위한 영업지는,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고려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이 된다.

(3) 당사자가 영업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주거소를 그의 영업지로 본다.

### 제7:102조 : 이행기

당사자는 다음의 시기에 이행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에;

(2)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어



는 때라도, 다만 구체적 경우의 제반 사정이 상대방이 그 시기를 정할 것을 추단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후 합리적 기간 내에.

#### 제7:103조 : 이행기 전의 이행

(1) 이행의 제공이 이행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당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령이 그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 제공된 이행을 수령하여도 이는 그 자신의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정하여진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104조 : 이행의 순서

당사자들의 각 이행이 동시에 행하여질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들은 제반 사정이 달리 추단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이행을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 제7:105조 : 선택적 이행

(1) 채무가 선택적 이행들(alternative performances) 중 하나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선택[의 권리]은 제반 사정이 달리 추단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행하는 당사자에게 속한다.

(2) 선택을 하여야 할 당사자가 계약상 정하여진 시기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 선택의 지연이 본질적인 경우에는,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b) 지연이 본질적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을 추가적으로 정하여 선택을 하여야 할 당사자로 하여금 그 안에 선택을 하도록 통지를 할 수 있다. 그 당사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 제7:106조 : 제3자의 이행

(1) 계약이 본인의 이행(personal performance)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obligee)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가 하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a) 제3자가 채무자(obligor)의 동의를 얻어 행위하거나; 또는

(b) 제3자가 이행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의 이행은 채무자를 해방시킨다(discharge).

## 제7:107조 : 금전지급의 방법

(1) 의무 있는 금전의 지급은 통상의 거래과정에서 이용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계약에 따라 또는 자의로 수표나 기타의 지급지시 또는 지급약속을 수령하는 채권자(creditor)는 그것이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7:108조 : 지급통화

(1) 당사자들은 금전지급이 특정한 통화로만 행하여질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이행기에 그 곳에서 통용되는 교환비율에 의하여 그 곳의 통화로 지급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debtor)가 이행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또는 실제의 지급시에 그 곳에서 통용되는 교환비율에 좇아 이행지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109조 : 변제충당

(1) 당사자가 동일한 성질의 의무를 다수 부담하는 경우에, 행하여진 이행이 이들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이행이 충당(appropriate)되어야 할 의무를 지정할 수 있되, 제4항에 따른다.

(2) 이행 당사자가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이행을 그가 선택하는 대로 그 의무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의무에 대한 충당은 효력이 없다:

- (a)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의무; 또는
- (b) 불법의 의무; 또는
- (c) 다툼 있는 의무.

(3) 어느 당사자의 [지정]충당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제외하고, 그 이행은 다음에서 지적된 순서로 그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무에 충당된다:

- (a)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또는 최초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 (b) 채권자의 담보가 최소인 채무;
- (c) 채무자의 부담이 최대인 채무;
- (d) 최초로 발생한 채무.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은 모든 채무에 안분하여 충당된다.

(4)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의한 금전지급은, 첫째, 비용에, 둘째, 이자에, 셋째, 원본에 충당된다. 다만 채권자가 다른 충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10조 : 수령되지 아니한 유체재산

(1) 상대방이 금전 이외의 유체재산(tangible property)을 수령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당사자는 그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점유 당사자는 그의 인도의무 또는 반환의무로부터 다음과 같이 면할 수 있다:

(a) 재산을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합리적 조건으로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또는

(b) 상대방에의 통지 후에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게 순매득금(net proceeds)을 지급함으로써.

(3) 그러나 그 재산이 급속히 劣化하거나(rapid deterioration) 그 보존에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처분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는 순매득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인도의무 또는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4) 점유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매득금으로부터 공제하거나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111조 수령되지 아니한 금전

당사자가 상대방이 적절하게 제공한 금전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수령 당사자에의 통지 후에 이행지의 법에 좇아 불수령 당사자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하여 금전을 보관시킴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7:112조 이행비용

각 당사자는 그 의무의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 제8장 불이행과 구제수단 일반

제8:101조 可用한 구제수단

(1)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불이행이 제8:108조에 따라 면책되는 것이 아닌(not excused)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aggrieved party)는 제9장에서 정하는 구제수단 중 어느 것도 원용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제8:108조에 따라 면책되는 것인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제9장에서 정하는 구제수단 중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원용할 수 있다.

(3) 당사자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불이행을 야기한 한도에서 그는 제9장에서

정하는 구제수단을 원용할 수 없다.

제8:102조 : 구제수단의 중첩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구제수단은 중첩될 수 있다. 특히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그 외의 어떠한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8:103조 : 본질적 불이행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 (a) 의무의 엄격한 준수가 계약의 핵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b) 불이행이 불이행당한 당사자로부터 그가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그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였고 또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 (c) 불이행이 고의적이고 또 불이행당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장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

제8:104조 : 불이행 당사자에 의한 추완(cure)

당사자가 제공한 이행이 계약에 상응하지 아니한다는(not confirm to the contract) 이유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이 본질적 불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상응하는 새로운 이행을 제공할 수 있다.

제8:105조 : 이행의 담보

(1) 상대방이 장래 본질적 불이행을 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적정한 이행의 상당한 보장(adequate assurance of due performance)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그러한 합리적 믿음이 계속하는 한 유보할 수 있다.

(2) 이 보장이 합리적 기간 내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장래 상대방의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으로 여전히 합리적으로 믿고 또 지체 없이 해제(termination)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106조 : 이행을 위한 추가적 기간을 정하는 통지

(1) 어떠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행을 위한 추가적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2) 추가적 기간중에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 자신의 반대의무의 이행을 유보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수단을 원용할 수는 없다. 그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그 기간의 경과까지 적절한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제9장의 정함에 따라 가용한 구제수단 중 어느 것이라도 원용할 수 있다.

(3) 이행이 지연되고 그것이 본질적이 아닌 경우에,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합리적 길이의 추가기간을 정하는 통지를 하였던 때에는, 통지상의 기간이 초과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 통지에서, 상대방이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됨을 정할 수 있다. 통지된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통지상의 기간으로부터 합리적 기간이 지난 후에야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는 경우가 그러하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8:107조 : 타인에게 위탁된 이행

계약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탁한 당사자는 여전히 이행에 대하여 책임 있다.

제8:108조 : 장애사유로 인한 면책

(1) 당사자가 그의 불이행이 그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사유(impedement beyond its control)로 인한 것이며 또 그 장애사유를 계약의 체결시에 고려하는 것이나 그 장애사유나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의 불이행은 면책된다.

(2) 장애사유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면책은 그 장애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연이 본질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를 본질적 불이행으로 취급할 수 있다.

(3) 불이행 당사자(non-performing party)는, 장애사유 및 그것이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지가 그가 그러한 사정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수령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그러한 통지의 불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09조 : 구제수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계약조항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은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배제나 제한을 원용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장 불이행에 대한 특별구제수단

## 제1절 이행청구권

## 제9:101조 : 금전채무

(1)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채권자가 아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에 기하여 의무 있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상당한(significant) 노력이나 비용지출 없이 합리적인 대체거래(substitute transaction)를 할 수 있었을 경우; 또는

(b) 이행이 당해 정황 아래서 불합리한 경우.

## 제9:102조 : 비금전채무

(1)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금전지급 이외의 의무에 대하여, 결함 있는 이행의 추완을 포함하여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이행을 얻을 수 없다:

(a) 이행이 불법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b) 이행이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을 야기하는 경우; 또는

(c) 이행이 인적 성질이 있는 용역 또는 작업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거나 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인 경우; 또는

(d)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다른 출처(source)로부터 합리적으로 이행을 얻을 수 있는 경우.

(3)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가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특정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면, 특정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 제9:10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

이 절에서 이행청구권이 배제된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이행을 유보할 권리

## 제9:201조 : 이행을 유보할 권리

(1) 상대방[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할(withhold performance) 수 있다. 그는 당해 정황 아래서 합리적인 바에 따라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그의 불이행이 명백한 동안에는, 이행을 마찬가지로 유보할 수 있다.

### 제3절 계약의 해제

#### 제9:301조 : 계약을 해제할 권리

(1) 상대방의 불이행이 본질적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행]지연의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제8:10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 제9:302조 : 분할이행되어야 할 계약

계약이 개별적으로 분할하여(in separate parts) 이행되어야 하고 또 그 각 부분에 대하여 반대이행(counter-performance)이 할당될 수 있는 경우에, 중대한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제권을 문제되는 부분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불이행이 전체로서의 계약에 대하여 본질적인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9:303조 : 해제의 통지

(1) 계약을 해제할 당사자의 권리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행사한다.

(2)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가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상실한다.

(3)(a) 이행이 이행기까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제공이 행하여지기 전에는 해제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 후에 제공이 행하여진 때에는, 그가 그 제공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상실한다.

(b) 그러나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할 의도가 여전히 있음을 알거나 알 이유가 있고, 그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임을 불합리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한 때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해제권을 상실한다.

(4) 당사자가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제8:108조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그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 자동적으로 또 통지 없이도 해제된다.

## 제9:304조 : 이행기 전의 불이행

본질적 불이행이 있을 것이 이행기 전에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305조 : 해제의 일반적 효과

(1) 계약의 해제는 쌍방 당사자를 장래의 이행을 실행하고 수령할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나, 이는 해제시까지 이미 발생한 권리와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되, 제9:306조 내지 제9:308조에 따른다.

(2) 해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계약규정 또는 기타 해제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할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306조 : 가치가 저하된 재산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그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재산의 가치가 상대방의 불이행의 결과로 자신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거절할 수 있다.

## 제9:307조 : 지급한 금전의 회복청구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절하게 거절한 이행에 대하여 그 전에 지급된 금전을 회복청구(recover)할 수 있다.

## 제9:308조 : 재산의 회복청구

계약이 해제되면, 금전지급 또는 기타의 반대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공급하였던 당사자는 그것이 반환될 수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회복청구할 수 있다.

## 제9:309조 : 반환불가능의 이행에 대한 회복청구

계약이 해제되면, 금전지급 또는 기타의 반대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공급한 당사자는, 그것이 반환될 수 없는 때에는, 이행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 금액을 회복청구할 수 있다.

## 제4절 대금감액

## 제9:401조 : 대금감액의 권리

(1) 계약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이행의 제공을 수령한 당사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감액은, 이행이 제공된 당시의 그 이행의 가액을 그 당시에 계약에 상응하는 이행제공이 가졌을 가액에 대하여 비교하였을 때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행하여진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감액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감액된 대금을 넘는 액을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초과액을 회복청구할 수 있다.

(3) 대금을 감액한 당사자는 이와 아울러 이행의 가액의 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가 입은 기타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 장 제5절에 의하여 填補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절 손해배상과 이자

##### 제9:501조 : 손해배상청구권

(1)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제8:108조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비재산적(non-pecuniary) 손실; 및
- (b)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reasonably like to occur) 장래의 손실.

##### 제9:502조 : 손해배상의 일반적 산정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불이행당한 당사자를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면 그가 있었을 처지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하는 액으로 산정된다.

##### 제9:503조 : 예견가능성

불이행 당사자는 그가 계약의 체결시에 그의 불이행의 개연적인 불이행 당사자는 그가 계약의 체결시에 그의 불이행의 개연적인 결과(likely result)로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504조 : 불이행당한 당사자에게 귀책되는 손실

불이행 당사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불이행 또는 그 결과(effects)에 기여한 범위에서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505조 : 손실의 경감

(1) 불이행 당사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을 경감할 수 있었을 범위에서 그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손실의 경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전보받을 권리가 있다.

제9:506조 : 대체거래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합리적 방식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 그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 및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기타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07조 : 시가

불이행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인 이행에 대하여 시가(current price)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계약가격과 해제 당시의 시가와 차액 및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기타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08조 : 금전지급의 지연

(1) 금전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 액에 대하여 이행기로부터 지급시까지 이행이 행하여지는 곳의 일반 상업은행의 계약상 통화에 대한 최우량 신용등급 고객을 위한 단기대여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 외에도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기타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909조 : 불이행의 경우를 위하여 합의된 금전지급

(1) 계약에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이행당한 당사자는 그의 실제의 손실과는 무관하게 그 액을 지급받는다.

(2) 그러나 그에 반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된 액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합리적 액으로 감축될 수 있다.

제9:510조 :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통화

배상될 손해는 불이행당한 당사자의 손실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통화로 산정되어야 한다.